

# 스마트 리볼빙 서비스 약관

시행일 : 2014. 12. 01

##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하나카드(주)(이하 “카드사”라 함)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가 정하는 회원 중 리볼빙 결제방식에 의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스마트 리볼빙(이하 “리볼빙”이라 함) 서비스란 회원이 국내·외에서 이용한 일시불 신용판매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제5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하 “리볼빙 청구금액”이라 함)만을 결제하고, 리볼빙 잔액에 대하여 카드사가 정한 일정율에 의한 수수료 (이자)를 부담하며,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리볼빙 이용대금이란 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되는 카드이용대금으로서, 전월 결제 후 리볼빙 잔액과 당월 청구대상 기간 중에 이용한 일시불 신용판매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으로 구성되며, 회원이 선택한 리볼빙 서비스 유형에 따라 특정 매출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약정결제비율이란 리볼빙 이용대금 중 회원이 결제일에 상환을 원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카드사가 정한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의 운영 범위\*내에서 5%단위로 회원이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의 운영 범위는 10~100%이며, 제6조 제①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최소결제비율이란 리볼빙 이용대금 중 회원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환비율로서,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20%), 이 비율로 산정된 리볼빙원금을 리볼빙 최소청구금액이라고 합니다(10,000원 미만은 만 단위로 절상). 최소결제 비율은 리볼빙 약정 이후 회원의 신용도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볼빙수수료율이란 리볼빙 이용대금 중 제4조 ③항에 의해 차회 리볼빙 이용대금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수수료율로서, 일시불 신용판매 금액에 적용되는 리볼빙일시불수수료율과,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적용되는 리볼빙 현금서비스수수료율로 구성되며, 각 리볼빙수수료율로 산정된 수수료 금액의 합산을 리볼빙수수료라고 합니다.

## 제3조(적용대상 및 기간)

리볼빙 서비스는 회원이 요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인한 회원에 한하여 약정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서 회원이 선택한 기간 동안 적용되며, 카드사는 회원에게 약정 만기 1개월 이전에 만기 도래 사실을 사전 통보합니다.

단, 회원이 리볼빙 서비스 기간 설정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되면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명의의 카드 모두에 리볼빙 결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회원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한도는 카드사의 카드이용한도 범위 내로 합니다.

리볼빙이 적용되는 상품은 국내·외에서 이용한 일시불 신용판매 또는 현금서비스이며, 할부, 카드론 및 기타 수수료는 카드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볼빙 약정 만기는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자동 연장 미희망 시 약정 만기일자 익일부로 리볼빙 서비스는 해지 처리됩니다.

## 제4조(청구 및 결제)

① 카드사는 제5조 제①항에 의해 산정된 리볼빙 청구금액에 할부, 카드론, 기타수수료 등이 합산된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고 회원

은 이를 결제합니다.

②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회원이 제①항의 합산된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된 금액이 리볼빙 최소청구금액과 리볼빙수수료, 할부, 카드론, 기타수수료 등의 합산액 이상 일 경우 이를 정상입금으로 간주하여 연체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②항의 경우 나머지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출되지 않고 차회 리볼빙 이용대금으로 이월되어 리볼빙 수수료와 함께 다음달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이 경우 카드는 SMS를 통하여 회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회원이 결제일에 최소결제비용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회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변제이익은 연체이자 높은 순서, 정상이자가 높은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회원에게 보다 유리한 순서(할부 신용판매,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현금서비스, 리볼빙 일시불 신용판매 청구금액 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제5조(청구금액의 산정)

① 카드사가 매월 회원에게 청구하는 리볼빙 청구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한 리볼빙 원금과 리볼빙 수수료의 합계액입니다.

가. 리볼빙원금 = 리볼빙 이용대금×약정결제비용

나. 리볼빙수수료 = 전월 이월잔액×리볼빙 수수료율×전월 결제일 익일부터 당일 결제일까지 경과일수÷365일.

단, 리볼빙 신규 일시불 신용판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최초 결제일전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며, 일시불 신용판매 이용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보다 낮은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② 리볼빙 이용대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리볼빙 이용대금 전부를 리볼빙원금으로 청구하며, 리볼빙 이용대금에 약정결제비용을 곱하여 산정된 리볼빙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리볼빙원금으로 5만원을 청구합니다. 다만, 약정결제비용에 의하여 산출된 리볼빙원금이 10,000원 미만은 만 단위로 절상합니다.

#### 제6조(각종 요율의 변경 등)

카드사는 리볼빙 결제대상, 결제대금 산정방법, 약정결제비용의 운영범위 및 최소결제비용, 수수료를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의 연체경력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기 변경사항을 회원에게 1개월 전에 사전통보하고, 기타 관련 법령에 정한 고지, 게시 등의 절차를 병행합니다.

회원은 카드사의 ARS,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원 및 관리점 등을 통한 방식 등 카드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드사가 정한 약정결제비용 운영범위 내에서 약정결제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용이 결제일 2영업일 이전에 변경되면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익월 결제일에 변경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카드사는 최소 3개월 동안은 리볼빙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 기간 경과 이후에는 동조 제①항에 따라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수수료율은 결제되지 않은 리볼빙 채무 잔액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카드사는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 1개월전까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인상된 리볼빙수수료율을 고지하며, 회원이 변경 후 최초로 수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수수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제되지 않은 리볼빙 이용대금 잔액에 대해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금융채무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지속된 적이 있거나, 3회 이상 연체경험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는 매월 회원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3개월 이내라도 리볼빙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신용도가 회복된 경우 카드사는 1개월 내에 회복된 신용도에 부합하는 수수료율로 인하여야 합니다.

#### 제7조(이용대금의 선결제)

회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⑩항에 따라 리볼빙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선결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은 결제할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카드사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제8조(결제방식 변경)

회원이 결제방식을 리볼빙방식에서 일반결제방식으로 또는 일반결제방식에서 리볼빙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리볼빙방식에서 일반결제방식으로의 변경은 변경일부터 발생한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매출액에 변경된 결제방식이 적용되며, 일반결제방식에서 리볼빙방식으로의 변경은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 2영업일전까지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소급 적용 됩니다.

결제방식을 리볼빙방식에서 일반결제방식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리볼빙 잔액(당월 회원의 결제일별 이용기간내에 사용한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이용액, 전월 리볼빙 결제 후 잔액과 해당 기간동안의 수수료 합계액)은 이후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전액 청구되며, 회원은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리볼빙 원금 및 해당 기간 동안의 리볼빙수수료를 전액 일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 제9조(결제대금연체)

정상결제금액이 리볼빙최소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 리볼빙최소청구금액에 대한 미결제금액을 연체 처리합니다.

제①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리볼빙최소청구금액-정상결제원금)×연체료율×연체일수÷365

#### 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이용대금(리볼빙 이용대금포함)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또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리볼빙 원금 및 수수료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3.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단, 여행 목적 등의 단기체류라고 카드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제11조(기타)

리볼빙서비스 대상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항변권과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순차로 적용됩니다.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동일한 사항을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2014.12.01 개정)